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11
----------	------

발의년월일 : 2010. 3. 3

발 의 자 : 유천호·김용근·오흥철·정종섭 의원
(찬성자 4인)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 선양과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참전명예수당)” 을 “(참전명예수당 등)” 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을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 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u>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u>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신설></p> <p>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 ----- -----<u>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u>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국가등의 책무) - 제9조(묘지에의 안장)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유족 등의 범위) -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는 그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③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된 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의하여 합장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 또는 안치를 위하여 묘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③ 삭제 <1994.12.31>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삭제 <1994.12.31>

⑧ 삭제 <2000.12.30>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 화장장(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소유지)· 보(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 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 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지방도), 시군도의 신설· 개수(개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화재예방과 소방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